

예산총칙

2024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24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1,367,514,574	41,025,437
일반회계	1,226,382,340	36,791,470
특별회계	141,132,234	4,233,967
공기업특별회계	134,562,312	4,036,869
상수도사업특별회계	30,287,508	908,625
하수도사업특별회계	104,274,804	3,128,244
기타특별회계	6,569,922	197,098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2,825,615	84,768
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	81,992	2,460
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	802,000	24,060
폐기물처리시설사업기타특별회계	186,874	5,606
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	2,289,241	68,677
지하수특별회계	384,200	11,526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,790,593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차입한도액은 76,2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 6 조 예산안 의회 의결 이후 교부결정된 국·도비 보조사업은 승인받은 것으로 하고, 사용 후에 의회보고로 같음한다.
(예산안 간주처리)